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3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김태규 · 안철수 · 김미애
이종배 · 나경원 · 윤용근
최은석 · 김기현 · 강대식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예외 없이 이어져 왔음.

이러한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및 비상임 운영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음. 첫째, 위원장이 월 1~2회 회의에 참석하여 사후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고발한 선거범죄 사건을 그 위원장이 소속된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셋째, 대법원장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위원장을 결정·검임하는 구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넷째, 법관 퇴직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어 헌법상 임기(6년)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함. 또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중심으로 운영해 옴에 따라, 사무처에 대한 견제와 내부감사가 형식화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호선제의 원칙을 회복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며(안 제5조제1항), ②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관할 지방법원장이 자신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제5항), ③ 위원장의 상임화에 따라 그 직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온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안 제6조 삭제 등),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되, 위원 9명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소속 공무원 및 그 친족·전직자 등의 위원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은 자신을 위원으로 추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항 중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인 위원장 1인을 두고,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임인 위원장 1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를 “副委員長이”로, “常任委員·副委員長이”를 “副委員長이”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를 “부총리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

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

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

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

⑤ -----
---副委員長이-----

副委員長이-----

-----.

<삭 제>

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
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
상 근무한 者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
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
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
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
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
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신 설>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총리의 보수와 동액으
로 하며, -----
-----정무직으로 하
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
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
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경제계 ·

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